

의안번호	제1024호
의결 연월일	2025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의약품 안전환경 조성 조례안

발의자	김호경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5년 5월 30일

충청북도 의약품 안전환경 조성 조례안

(김호경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2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5월 30일

발의자 : 김호경, 이태훈, 노금식,
박용규, 변종오, 임영은,
황영호

1. 제안이유

최근 고령화 사회 진입 및 만성질환자 증가로 의약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부작용, 오남용, 폐의약품 무단배출 등 의약품 사용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,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하고, 불용·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약 안내 활성화 등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서 사용하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~제2조)
- 나.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계획의 수립 및 시행,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,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~제6조)
- 라. 홍보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(안 제7조~제8조)

3. 조례안 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 : 붙임

나. 비용 추 계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협 의 : 충청북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식의약안전과

라. 조례안 예고 : 예고 대상(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)

충청북도 의약품 안전환경 조성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의약품"이란 「약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.
2. "의약품 안전사용"이란 충청북도민(이하 "도민"이라 한다)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사용하여 그 유익성은 극대화하고 부작용 및 오남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.
3. "불용의약품"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.
4. "폐의약품"이란 불용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계획의 수립 및 시행) ①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(이하 "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
2.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
3.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
4.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배출·수집·보관·운반 및 처리
5.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
6.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
7.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
8.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)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
2.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안전한 수거·보관·운반 및 처리
3.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 안내 활성화
4.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재정지원)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.

제7조(홍보)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.

제8조(관계기관 등과의 협조)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약사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4. “의약품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.

가. 대한민국약전(大韓民國藥典)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

나.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·치료·경감·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·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

다.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(藥理學的)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·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

충청북도 의약품 안전환경 조성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수거·검사와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생애 주기별 예방교육·홍보 등을 통해 도민 건강 보호 및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

2. 비용 발생 요인

- 불량 의약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약품 수거·검사
-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

3. 관련조문

- 조례안 제5조(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은 2025년~2029년까지 5년으로 하고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음
- 의약품 수거검사 비용 연 2백만원,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맞춤형 예방교육 강사 인건비 연 1천만원 편성하는 것으로 가정
- 산출내역 : 수거 검체구입비 10만원(평균) × 20건 = 2백만원
예방교육 강사인건비 10만원 × 100회 = 1천만원

나. 추계 결과

- 충청북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시행할 경우, 소요되는 비용은 의약품 수거검사비 1천만원,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강사 인건비 5천만원으로 **5년간 총 6천만원 비용이 소요**될 것으로 예상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5년)	2차년도 (2026년)	3차년도 (2027년)	4차년도 (2028년)	5차년도 (2029년)	계
세 출		12,000	12,000	12,000	12,000	12,000	60,000
다소비 의약품 안전관리 (수거검사) 사업		2,000	2,000	2,000	2,000	2,000	10,000
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	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50,000
재원 조달		12,000	12,000	12,000	12,000	12,000	60,000
자체 수입	소 계	12,000	12,000	12,000	12,000	12,000	60,000
	지방세	12,000	12,000	12,000	12,000	12,000	60,000
	세외수입	-	-	-	-	-	-
시·군비		-	-	-	-	-	-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-	-	-	-	-	-